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0
----------	-------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2011. 4.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 나.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의 정의를 수정(안 제2조)
-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정비(안 제9조)
 -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추가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변경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변경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8. 28. ~ 9. 17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4.9.23)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

제4조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을“(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을 “녹색제품 구매지침”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을“(녹색제품 구매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으로”를 “녹색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3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의 촉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을 “(녹색제품 생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을 “(녹색제품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탁월한 자”를 “탁월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u> <u>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상</u> <u>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서 <u>친환경상품</u>의 구매를 촉진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친환경상품</u>”이란 같은 용 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u>상품</u>”이라 한다)에 비하 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 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u> <u>관한 법률</u>」 제20조제1항에 따른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 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 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u> <u>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녹색제품</u> <u>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 <u>녹색제</u> <u>품</u>-----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u>녹색제품</u>”이란 「<u>녹색제품</u> <u>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p>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생략)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2. (현행과 같음)

3. -----

녹색제품-----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3. · 4. (생략)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조(적용대상 기관)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

② -----
-----.

1. 녹색제품 구매촉진-----

2.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생략)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구매목표금액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2. 녹색제품 구매촉진-----

3. ----- 녹색제품 -----

4. ---- 녹색제품 -----

5. (현행과 같음)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
----- 녹색제품
구매지침-----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② -----
-----.

1. 녹색제품 -----
---- 녹색제품-----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구매촉진--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

--

③ ----- 녹색제품 -----

-----.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2. 녹색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

4. 녹색제품 구매촉진-----

② 녹색제품-----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
----- 녹색제품 -----
-----.

우로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생략)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을 -----
-----.

1. ----- 녹색제품 -----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
제품 판단기준 -----
-----.

1. -----

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

제10조(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구 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구 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

-----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의 촉진

제10조(녹색제품 생산 지원) -----
----- 녹색제품-----

-----.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 녹색제품 -----

----- 녹색제품의 우선구매 -----
-----.

② -----
----- 녹색제품 -----
-----.

③ ----- 녹색제품 -----

-----.

제13조(포상) ----- 녹색제품 -----

탁월한 사람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4년 10월 31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4년 10월 21일

4. 관련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5. 개정이유

2011.4.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6.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으로 변경함.

나. 상위법령에 맞게 “녹색제품”의 정의를 수정(안 제2조)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정비(안 제9조)

-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추가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변경함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변경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조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제9조제4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는 직위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정부조직법 제37조 (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됨에 따라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